

## 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반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 공시송달 공고

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,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에 의거,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가 고용조정제한기간동안 인위적 감원으로 인한 장려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주에게 「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반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」를 2회에 걸쳐 등기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6. 6. 8.

###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장



1. 건명 : 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반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
2. 근거 : 「고용보험법」 제2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,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, 제14조 제4항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사업장명 (성명)	사업장관리번호	주소	서류의 명칭	공시송달 내용
세차OO격인	165-28-00***-0	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중앙로	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반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	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반환명령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

4. 공고 기간: 2026. 6. 8. 부터 2026. 6. 22. 까지(15일간)
5. 기타 사항은 천안고용복지+센터 기업지원팀 문소현(☎ 041-620-749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